

치료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장애인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중증도 분류 관련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정다운

## I. 들어가는 말

지난 12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중증도 분류(Triage)’<sup>1)</sup>와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음을 선언하면서, 입법자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sup>2)</sup>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이후 지금까지 독일 의료계에서는 ‘중환자의학과 응급의학을 위한 독일 학제 간 연합’(Deutsche Interdisziplinäre Vereinigung für Intensiv- und Notfallmedizin, 이하 ‘DIVI’)이 권고한 중증도 분류 체계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인으로, DIVI가 권고한 기준에 따라 중증도 분류를 실행할 경우 자신들이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장애인 보호를 위한 의료자원의 분배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입법자의 이러한 입법적 의무는 무엇보다도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에 근

1) ‘Triage’는 프랑스어로 ‘선별’, ‘구분’, ‘분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 또는 재해 등의 상황에서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부상자를 분류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한다.

2) BVerfG, Beschluss des Ersten Senats vom 16. Dezember 2021 - 1 BvR 1541/20.

거하며 이를 위반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폭증으로 독일 의료계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자 독일 사회 내에서 중증도 분류와 관련한 헌법적, 입법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배경이 된 DIVI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독일 의료계와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사진 1: 독일 도시 킬(Kiel)의 한 중환자 병동의 모습 ><sup>3)</sup>

## II. 사건개요

심판청구인들은 총 9명으로 이 중 8명은 시각장애, 척추 근위축증(Muskelatrophie)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가장 고령인 77세로 만성질환인 관상동맥심장질환(koronare Herzerkrankung)과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들이 헌법소원 심

3) 사진 출처: Der Tagesspiegel, Bundesregierung will „zügig“ Gesetzentwurf für Triage vorlegen, 28.12.2021(<https://www.tagesspiegel.de/politik/nach-urteil-des-verfassungsgerichts-bundesregierung-will-zuegig-gesetzentwurf-fuer-triage-vorlegen/27929216.html>, 최종검색일: 2022. 1. 26.).

판을 청구한 시기는 2020년 6월로, 상기한 바와 같이 당시 독일에는 중증도 분류와 관련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료현장에서는 DIVI의 권고가 통용되어 왔다. DIVI는 2020년 3월 25일 '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응급 의학과 중환자의학 분야에서의 자원 분배에 관한 결정(Entscheidung über die Zuteilung von Ressourcen in der Notfall- und Intensivmedizin im Kontext der COVID-19-Pandemie)'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에 대한 첫 번째 의학윤리적 권고를 공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의 우선순위 부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치료의 '성공가능성(Erfolgsaussicht)'이다.<sup>4)</sup> 이는 치료를 통해 더 높은 '생존확률(Überlebenswahrscheinlichkeit)' 또는 전체적으로 더 나은 예후가 보장될 때 우선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치료의 효과가 전혀 없거나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병약함(Gebrechlichkeit) 또는 심각한 합병증(Komorbidität)이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고려된다.

DIVI가 제시한 기준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신체장애와 그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병약함과 합병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제 통계를 살펴볼 때도 이들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성공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낮은 치료 우선순위를 부여받거나 아예 치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기준과 그 과정에서의 장애인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DIVI의 권고와 같은 의료계의 지침이 아닌 입법자에 의해 마련된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입법의무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조항과 “협약 당사국들은 장애를 이

---

4) DIVI, Entscheidung über die Zuteilung von Ressourcen in der Notfall- und Intensivmedizin im Kontext der COVID-19-Pandemie, Fassung vom 25.03.2020, S. 4 (<https://www.divi.de/aktuelle-meldungen-intensivmedizin/covid-19-klinisch-ethische-empfehlungen-zur-entscheidung-ueber-die-zuteilung-von-ressourcen-veroeffentlicht>, 최종검색일: 2022. 1. 26.).

유로 한 차별 없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장애인 건강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제25조의 장애인 건강권 규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입법불비가 지속될 경우 청구인들의 ‘인간 존엄성’(기본법 제1조 제1항5)과 ‘신체와 생명에 대한 권리’(기본법 제2조 제2항6)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

### III.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 1. 청구인 적격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이 뜻하는 ‘장애’는 한 개인의 독자적인 생활관리(Lebensführung) 능력이 장기적으로 약화된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장애가 초래된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생활관리 능력이 장기적으로 약화되었다면 만성질환자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관상동맥심장질환과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심판청구인 1인은 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나머지 8인의 심판청구인들과 달리 생활관리 능력이 장기적으로 약화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2.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보호 영역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이 다양한 보호 영역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동 규정은 ‘주관적 방어권(subjektive Abwehrrecht)’으로서 국가에 의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한다. 이러한 차별에는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 즉 결과적으로 차별의 효과를 불러오는 구분

5)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6)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Unterscheidung) 행위 또한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규정과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장애인 개인의 발현가능성(Entfaltungsmöglichkeit)과 활동가능성(Betätigungsmöglichkeit)을 배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규정과 정책수단 또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으로부터 주관적 방어권 외에도 국가의 장려과제(Förderauftrag)가 도출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는 이용 가능한 모든 재정적, 인적, 물적, 조직적 수단들에 대해 동등한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Anspruch)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명령은 모든 법영역(Rechtsgebiet)에서 존중되어야 할 ‘객관적 가치질서(objektive Wertentscheidung)’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모든 국가권력(staatliche Gewalt)이 이에 구속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입법권 영역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도 장애인 차별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동 규정의 목적이 장애인의 법적, 사회적 배제(Ausgrenzung)를 방지하고 극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에 의한 배제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행위에 의한 배제에도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보호과제(Schutzauftrag)가 특정 상황에서는 입법자의 장애인 보호의무(Schutzpflicht)로까지 발전한다고 강조하였다. 장애인과 그의 주변 환경의 모든 일상적 현실에 대해 입법자가 포괄적인 행위 의무(Handlungspflicht)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부여된다고 한다. 재판부가 제시한 상황은 3가지로, 인간 존엄성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의적인 장애인 배제가 이루어지는 상황,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7)의 생명 보호와 같이 기본법상 최고의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Rechtsgut)이 침해되는 위험 상

---

7)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황, ‘구조적 불평등(strukturelle Ungleichheit)’이 존재하는 상황이 그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가 구체적 입법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법부는 입법부의 입법재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즉 입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넓은 판단여지(Einschätzungsspielraum), 평가여지(Wertungsspielraum), 형성여지(Gestaltungsspielraum)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입법자가 전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입법자에 의해 마련된 보호조치들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또는 그 조치들이 보호목적 달성에 충분하지 않거나 보호목적에 아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입법 의무 위반을 선언할 수 있다.

### 3. 중증도 분류에 대한 입법자의 장애인 보호 의무

재판부는 중증도 분류의 상황에 놓인 코로나19 환자들이 장애를 이유로 치료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에서 차별받게 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보호과제가 보호 의무, 즉 차별을 저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로 발전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법질서 내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으며, 중증도 분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피할 수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보호되는 건강과 생명에 대한 법익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는 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덧붙여 재판부는 중증도 분류의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이 차별에 대응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면서, 심판청구인들의 장애 정도와 그로 인한 다양한 증상 및 질환들을 살폈을 때 이들 또한 중증도 분류의 상황에서 차별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많은 전문가의 평가서와 입장표명, 그리고 무엇

보다도 DIVI의 권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로, 먼저 연방의사협회(Bundesärztekammer)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개신교 장애인지원 연방협회(Bundesverband evangelische Behindertenhilfe)’, ‘카리타스 장애인지원(Caritas Behindertenhilfe)’ 등 다수의 장애인 전문기관과 사회협회(Sozialverband) 또한 장애인 차별의 위험성이 실제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인력들이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민감성이 낮아 장애인들의 특수성과 생활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들에 대한 무의식적 고정관념이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DIVI가 제시한 권고 사항이 이러한 차별 위험성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의학 전문법(Fachrecht) 분야에서의 ‘의학적 표준(medizinischer Standard)’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DIVI가 권고 내용을 수정하여 특정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이유로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시하였지만, 이전의 권고에서처럼 병약함과 합병증이 치료의 성공가능성 판단에 있어 변함없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와 이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병약함과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이렇듯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게 될 위험이 엄연한 중증도 분류의 상황에 대하여 입법자가 장애인을 보호할 목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입법의무에 반한 입법부 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치료 우선순위의 결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자가 조속히 의료자원 분배와 관련된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4. 입법제량

재판부는 입법자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넓은 판단여지, 평가여지, 형성여지를 가지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차별 방지 수단들을 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때, 장애인 확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느라 의료시설의 제한적인 인적·물적 자원들에 추가적 부담을 지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 고유의 현실과 사리(Sachgesetzlichkeit), 즉 의학적 사유에 따라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결정의 속도, 전문 의학지식과 경험에 따른 구체적 개별사례에서의 판단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최종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의료자원 분배 기준을 명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다른 헌법 규정들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라면 입법자가 재량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입법자가 장애인 확진자에게도 의료자원이 분배될 수 있게 확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면 그 분배 기준은 ‘현재의 단기적 생존확률(aktuelle und kurzfristige Überlebenswahrscheinlichkeit)’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분배 기준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분배 절차에 관련된 규정들 또한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치료 우선순위 결정을 검토하게 하는 이른바 ‘다중평가의 원칙(Mehraugen-Prinzip)’과 결정 과정을 문서화(Dokumentation)하는 절차들을 도입해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중증도 분류 상황에서의 장애인 차별 방지를 교육하기 위해 의학과 간호학 분야, 특히 중환자실 의료인력들의 직업교육(Ausbildung)과 추가교육(Weiterbildung)에 대한 특별 규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IV. 각 분야의 반응



## 1. 의료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개된 직후, DIVI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8)</sup> 장애인 보호를 위해 중증도 분류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한 재판부의 결정은 딜레마 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DIVI의 공식 의견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 결정의 내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현 DIVI의 권고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DIVI는 이미 다른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하여 중증도 분류를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형식의 연수(Fortbildung) 과정을 마련해 있는데,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지지하여 장애인 차별 방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중환자실 의료인력의 직업훈련 및 추가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 정부 및 정치권

독일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장관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은 트위터를 통해 독일 정부가 중증도 분류 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9)</sup> 그는 중증도 분류의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발생 상황에 대비해 명시적인 규정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장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도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비장

---

8) DIVI, Stellungnahme der DIVI zum Beschluss des ersten Senat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Benachteiligungsrisiken von Menschen mit Behinderung in der Triage, 28.12.2021(<https://www.divi.de/presse/pressemitteilungen/stellungnahme-zum-beschluss-des-ersten-senats-des-bundesverfassungsgerichts-zu-benachteiligungsrisiken-von-menschen-mit-behinderung-in-der-triage>, 최종검색일: 2022. 1. 26.).

9) LTO, Gesetzgeber will schnell handeln, 28.12.2021(<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entscheidung-triage-corona-reaktionen-politik-verbaende-patientenschuetzer/>, 최종검색일: 2022. 1. 26.).

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국가의 보호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중증도 분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sup>10)</sup> 부쉬만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효과적인 감염예방조치와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도 분류의 상황 자체를 미리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독일의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의 보건정책 대변인 하이케 베렌스(Heike Baehrens)는 사회민주당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발표하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바와 같이 중증도 분류 상황에서의 치료 우선순위는 현재의 단기적 생존확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반 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에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1)</sup> 이와 달리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의 법정책 대변인 카트린 헬링-플라르(Katrin Helling-Plahr)는 특히 중증도 분류의 절차에 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즉시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기독교민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의 법정책 대변인 귄터 크링스(Günter Krings) 또한 중증도 분류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치료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결정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법규정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들을 일일이 명시할 수 없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외적 한계만을 명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sup>13)</sup>

## V. 나가는 말

10) tagesschau, Bundestag muss Triage-Regelung treffen, 28.12.2021(<https://www.tagesschau.de/inland/triage-bverfg-101.html>, 최종검색일: 2022. 1. 26.).

11) LTO, Gesetzgeber will schnell handeln, 28.12.2021(<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entscheidung-triage-corona-reaktionen-politik-verbaende-patientenschuetzer/>, 최종검색일: 2022. 1. 26.).

12) LTO, Gesetzgeber will schnell handeln, 28.12.2021(<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entscheidung-triage-corona-reaktionen-politik-verbaende-patientenschuetzer/>, 최종검색일: 2022. 1. 26.).

13) LTO, Gesetzgeber will schnell handeln, 28.12.2021(<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entscheidung-triage-corona-reaktionen-politik-verbaende-patientenschuetzer/>, 최종검색일: 2022. 1. 26.).

심판청구인 중 한 명인 독일 트리어(Trier)의 판사 낸시 포저(Nancy Poser)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난 뒤 한 인터뷰를 통해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sup>14)</sup> 그녀는 중증도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저는 법률가로서의 자신에게는 ‘헌법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번 결정을 통해 기본법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매우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미كرون 변이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독일에서 중증도 분류의 상황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입법을 명했을 만큼 중증도 분류 상황에서의 장애인 보호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방의회에서의 입법 논의와 사회적 논의는 모두 시작단계이다.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규정들을 마련할 것인지, 일반 평등대우법 등 기존의 법률에 법규정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가운데 독일 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어떠한 장애인 보호 조치를 취할지 독일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증도 분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독일의 논의는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중증도 분류와 관련한 독일의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4) LTO, Gesetzgeber will schnell handeln, 28.12.2021(<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entscheidung-triage-corona-reaktionen-politik-verbaende-patientenschuetzer/>, 최종검색일: 2022. 1. 26.).